학 생 회 칙

제정 1996. 9. 1

개정 2000. 9. 1

개정 2002. 1. 1

개정 2012. 3. 1

개정 2018.11.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대학문화를 선도하며, 국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품성과 자질을 갖춘 각종 학생자치활동의 구현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재학생으로 한다. 단, 학생회비 미납자나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학생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공식적인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본회의 목적과 대학이념에 근거한 발전적 방안을 건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학칙 및 본회의 회칙과 운영방안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임무)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행사 및 학술연구 활동, 이와 관련된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2. 각종 봉사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3. 각종 취미, 예술, 체육 등의 기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 기타 학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참여 및 지원

제6조(회의구성) 본 회는 회칙 제2조와 제5조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구성한다.

①총학생회

②대의원회

③운영위원회

④스쿨학생회

⑤졸업준비위원회

⑥동아리 연합회

제7조(활동제한) 본 회의 회원은 학생 신분을 벗어난 위업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조(효력정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시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 된다.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9조(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 기구로서 그 구성은 본 회 전체 회원으로 하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0조(권한)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의 전면 개폐 및 본 회원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항을토의 결정한다.

제11조(소집) 학생총회는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6일전에 공고되어야한다.

제12조(의결) 학생총회는 본 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중 의결 정족수 미만일 경우 그 해당시점의결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 그 의결 권한을 위임한다. 이 때 의결 권한에 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제3장 대 의 원 회

제13조(지위 및 구성) 대의원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로서 본 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스쿨의 전공대표 및 스쿨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단,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된 경우 각 동아리 회장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동아리연합회장도 이에 포함된다.

제14조(의장)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공대표 및 스쿨회장단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15조(권한 및 역할)

1. 총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2. 학생회비 예․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승인

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집행위원회(집행부) 불신임 결의

5. 학생총회 소집요구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심의 및 승인

제16조(소집)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일전 에 공고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결) 대의원회는 의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중 의결 정족수 미만일 경우 해당 시점의 의결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 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스쿨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스쿨 학생회장 1인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 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집행부)와 동아리 연합회장은 회의 참관이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이 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제20조(자격) 운영위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학칙 및 기초생활질서 위반 조항을 포함한 상벌규정에 의거 불이익이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21조(권한 및 역할)

1.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총학생회 사업계획안 작성

3. 학생회비 예․결산안 작성 및 발의

4. 집행위원회 인준 동의

5. 사업 및 예산집행 감사 및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6. 대의원회 소집 요구

7. 기타 대의원회의 의견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이나 운영위회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총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운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23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24조(지위 및 책임)

1. 총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되며, 본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단,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 운영 위원이 운영위원회와 함께 본 회의 집행위원회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자격) 총․부 학생회장은 임명 직전 학기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과목실격이 없는 자로서 학칙 및 기초생활질서 위반 조항을 포함한 상벌규정에 의거 불이익이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26조(선출)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그에 관한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 저조 등의 사유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할 경우 각 스쿨별 대표의 간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27조(업무) 총․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위원회(집행부)의 각 부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와 함께 예산을 편성,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대의원회에 제출 승인된 사업 이외에 사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계획, 집행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8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매년 당선일부터 익년 말일까지로 그 임기를 정한다.

제 6 장 집행위원회(집행부)

제29조(지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부"라 한다)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 이다.

제30조(구성) 집행부는 총․부학생회장과 각 부서장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각 부서 차장을 둘 수 다.

제31조(자격) 집행부 각 부서장의 자격은 임명 직전 학기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과목 실격이 없는 자로서 학칙 및 기초생활질서 위반 조항을 포함한 상벌규정에 의거 불이익이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2조(기능)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위임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 전반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칙개정 및 예산책정 등의 중요 안건 발의

제33조(부서) 집행부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제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책기획부 : 본 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각종 행사의 기획, 대외교류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총 무 부 : 본 회의 회계사무, 회의 및 각종 행사 운영과 집행부 전반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3. 체 육 부 : 본 회의 행사 중 회원의 체력단련 및 체육행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문화부 : 본 회의 교육, 학술, 문화, 예술 행사 등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5. 복 지 부 : 본 회 회원들의 복지에 관한 제반 활동 및 교내․외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홍 보 부 : 본 회 활동 및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7. 집행부는 위에 준하여 당해연도 집행위원회 성격에 따라 변경 및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7 장 스 쿨 학 생 회

제34조(지위) 스쿨학생회는 각 스쿨의 최고 학생기구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인 스쿨학생회장이 이를 대표한다.

제35조(구성) 스쿨학생회는 각 스쿨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36조(기능) 스쿨학생회는 각 스쿨의 관련 행사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운영한다.

제 8 장 졸 업 준 비 위 원 회

제37조(구성) 졸업준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위원 중 투표로 선출하여 졸업위원회 위원장 및 졸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본교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39조(임기) 위원회는 선출 당해 4월부터 차기년도 졸업식까지로 한다.

제 9 장 재 정

제40조(경비) 총학생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학생 자치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41조(회비책정/납부) 차기년도 회원 회비의 금액 책정은 매년 12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통상 매 년 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을 그 시기로 하고, 수납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본 대학 교육지원처에 위임한다.

제4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차기 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 까지 예산안을 대의원회 제출하고 대의원회는 회계연도 15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44조(가예산과 추경예산)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승인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총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에 준 하는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 승인 후 사업 변경으로 인한 예산초과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감사) 본 회는 회계연도 말에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사항을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46조(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제47조(심의 개정) 발의된 개정안은 대의원회의 2/3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시행세칙

제48조(시행세칙) 본 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의원에서 심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